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23년 12월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건축구조설계 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신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1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건축구조안전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지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